



#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

〈지난호에 이어〉

## 3. 배출부과금 제도 (법 제41조)

### 3-1. 배출부과금제도의 연혁

- 1981. 12. 31 : 환경보전법 개정시 법적 규제 사항인 개선, 이전명령의 이행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으로서 부과금 징수규정을 신설
- 1983. 9. 1 : 배출부과금제도 시행
  - 수질오염물질(12종) :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 네이트드비페닐,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 1987. 6. 4 : 배출부과금제도 전면 강화
  - 부과기관의 기산일 변경 :  
개선명령일부터 부과하던 것을 시료채취일 부터 부과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신설
- 1991. 1. 28 : 기본부과금제도 신설 등 개선
  - 기본부과금 도입 : 400만원~50만원(1종 ~5종)
- 1991. 6. 28 : 폐놀오염상태로 수질분야 배출 부과금제 강화
  - 초과율별 부과계수 상향조정 (1.0⇒4.5, 3.0⇒7.0)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강화(1.05⇒1.3)
  - 부과대상 오염물질 항목 추가(12종⇒15종)
  - 추가오염물질(3종) : 폐놀, 테트라클로로에

- 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1992. 12. 8 배출부과금 납부지연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시행 '93. 6. 9)
  -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및 제22조(증가산금)을 준용
- 1993. 6. 9 : 시행령 개정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신고시 배출부과금 경감혜택 확대  
⇒ 기본부과금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적용을 면제하던 것을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적용까지 면제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조정(수질)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3⇒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1종(1.5) ~ 5종(1.1)』
- 1994. 11. 11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부과금의 납부방법 변경
  - 사업자 공동부담에서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확정 분담부담
- 1995. 1. 1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시행
  -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납부처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변경
- 1995. 12. 29 :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제도도입('97. 1. 1 시행)
  -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을 부과  
⇒ 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96. 7.31)

• 부과체계 변경

구분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허용기준이하
종전	기본부과금 + 처리부과금	미 부과
개정	사업장별부과금 + 처리부과금	기본부과금

30~60% : 100분의 50  
 60~90% : 100분의 80  
 90% 이상 : 100분의 90

-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 항목 추가 (15종→17종)
- 추가오염물질(2종) :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 1999. 10. 13 : 대기부과금 부과체계 및 부과계수 조정
- 초과부과금중 중별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상향조정
- 기본부과금에서 농도별 부과계수 면제점을 20%미만에서 30%미만으로 하고, 농도별 부과계수를 조정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포함
-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하여 개정
- 2000. 8. 5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및 기본부과금 관련 계수조정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강화 (1종을 1.5에서 1.6, 1.7, 1.8까지 확대)
- 기본부과금 : 사업장별부과계수를 신설 (1.1~1.8, 8단계)하고, 폐수재이용율에 상응하는 감면제 도입 (10~80%까지 확대)
- '03. 1. 1 : 수질부과금 대상항목 확대 (17종→19종, 총질소, 총인)
- 총질소, 총인은 '03. 1. 1부터 시행. 다만,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과 도금시설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은 일정기간 완화(1.29공포)
- '03. 6. 5 : 수질기본부과금 재이용율 감면단계 조정 (8단계 4단계)
- \* 재이용율이 10~30% : 100분의 20

3-2. 부과금의 성격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제도
-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배출기간 등에 따라 산정 부과

3-3. 적용범위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이내일지라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할 경우
- 대상사업장
  - 개별사업장(무허가, 무신고 포함)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부과금만 해당)

3-4. 부과징수기관

- 개별사업장 : 시·도지사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3-5. 부과대상 오염물질

- 초과부과금(19종) :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시안, 유기인, 납, 6가 크롬, 비소, 수은, PCB, 구리, 크롬,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아연, 망간, 총질소, 총인
- \* 총질소, 총인은 2003. 1. 1부터 시행하였으나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과 도금시설은 총질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일정기

간 완화(1. 29, 공포)

- 도금시설

구분	적용기간 및 총질소 배출허용기준(mg/ )	
	2005. 12. 31까지	2006. 1. 1 이후
청정	30이하	30이하
가	200이하	60이하
나	200이하	60이하
특례	200이하	60이하

-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구분	적용기간 및 총질소 배출허용기준(mg/ )		
	2005. 12. 31까지	2006.1. 1부터 2007. 12. 31까지	2008. 1. 1 이후
청정	30이하	30이하	30이하
가	200이하	120이하	60이하
나	200이하	120이하	60이하
특례	200이하	120이하	60이하

3-6.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
-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부과금(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500만원)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기본부과금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기본부과금**

- 적용사업장 : 1종 내지 4종사업장 <산정방법>
- 부과금액은 배출허용기준이하로서 방류수 수

질을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각종 계수를 곱하여 산정

오염물질 배출량(kg)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초과부과금과 동일
- 연도별 산정지수 : 초과부과금과 동일
- 사업장별 부과계수(영 제19조제2항관련)

사업장 규모	1종사업장 (단위: m³/일)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부과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 지역별 부과계수 : 청정 및 가지역 1.5, 나 및 특례지역 1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1~2.8)

$$\frac{(\text{배출농도} - \text{방류수 수질기준})}{(\text{배출허용기준} - \text{방류수 수질기준})} \times 100$$

\* 분모의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적을 경우와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함.

- 오염물질 산정방법

- 사업자가 제출하는 배출량을 근거로 하여

구분	시기	근거자료
예정배출량 (사전)	매반기 시작 첫째월	-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서의 배출량 및 농도 - 최근의 가동결과 : 전반기 확정배출량 관련 자료 - 폐수배출량 및 농도 증감예측자료
확정배출량 (사후)	매반기 종료 다음월	- 배출구별 자기측정자료 - 점검기관에서 통보한 오염도 검사결과(검사배출량)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0이상 적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동방지사설 운영자는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첨부

자료제공 :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부  
다음호에 계속...

환경부 공고 제2006-88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13 일  
환경부 장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mg/L)

일련 번호	수종말처리시설명 (소재지)	오염물질항목	별도배출 허용기준	일련 번호	수종말처리시설명 (소재지)	오염물질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	복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충남 금산군)	BOD	- 원폐수	5	안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경남 통영시)	BOD	- 조립금속업: 250이하 - 폐기물처리시설: 80이하 - 기타 업종: 원폐수			
		COD	- 원폐수				COD	- 조립금속업: 220이하 - 폐기물처리시설: 150이하 - 기타 업종: 원폐수		
		SS	- 원폐수			SS		- 조립금속업: 325이하 - 폐기물처리시설: 50이하 - 기타 업종: 원폐수		
		T-N	- 원폐수				T-N	- 원폐수 (조립금속 및 폐기물처리시설 제외)		
		T-P	- 원폐수					T-P	- 조립금속: 15이하 - 기타 업종: 원폐수(폐기물처리시설 제외)	
2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충남 금산군)	BOD	- 원폐수			6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BOD	- 음료제조업: 370이하 - 농수산물제조업: 1,100이하 - 기타 업종: 원폐수	
		COD	- 원폐수						COD	- 음료제조업: 200이하 - 농수산물제조업: 450이하 - 기타 업종: 원폐수
		SS	- 원폐수					SS		- 음료제조업: 220이하 - 농수산물제조업: 540이하 - 기타 업종: 원폐수
		T-N	- 원폐수						T-N	- 원폐수
		T-P	- 원폐수							T-P
3	금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충남 금산군)	BOD	- 원폐수	BOD	- 음료제조업: 370이하 - 농수산물제조업: 1,100이하 - 기타 업종: 원폐수					
		COD	- 원폐수					COD	- 음료제조업: 200이하 - 농수산물제조업: 450이하 - 기타 업종: 원폐수	
		SS	- 원폐수							SS
		T-N	- 원폐수	T-N	- 원폐수					
		T-P	- 원폐수					T-P	- 원폐수	
4	동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충북 옥천군)	노르말핵산 추출물	- 원폐수	T-N	- 원폐수					
		BOD	- 원폐수			T-P	- 원폐수			
		COD	- 원폐수							
		SS	- 원폐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